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 17호)

○ 2018. 09. 07.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08. 24.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 08. 31.

다. 상 정 일 자 : 2018. 09. 07.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심경석)

-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7년 2조 3,000억원 규모로 급성장 하였고, 2020년에는 6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유기견 문제와 동물학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구청장의 의무)에서는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초구민의 동물보호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서는 서초구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에서는 동물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안 제9조에서는(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와 안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와 등록 방법,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부터 안 제13조(동물보호센터 감독)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에 대한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에서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6조(동물보호 및 관리)에서는 유기동물보호담당자의 지정, 공

수의사의 진료 등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동물의 반환 등)에서는 유기동물의 반환에 대한 방법, 절차를 규정하였고, 유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서는 피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소유권이 서초구로 귀속된 경우 분양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9조(소요경비의 징수)에서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사용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2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에서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 및 중성화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에서는 구청장은 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2조(출입·검사)에서는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3조(동물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서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2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강북구·강서구·광진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서초구 유기동물 보호센터 실적

년도	유기동물 처리내역						축종별 처리실적			
	계	반환	입양	자연사	안락사	보호	계	개	고양이	기타
2016년	178	44	42	33	57	2	178	113	56	9
2017년	195	51	37	37	63	7	195	131	56	8

☞ 서초구 동물 구조·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실적

구분	총 계		동물구조보호관리		길고양이 T.N.R		위탁업체
	처리두수	집행액	처리두수	집행액	처리두수	집행액	
2017년	811	24,863,200	192	30,720,000	619	62,959,000	(사)한국 동물구조 관리협회
2016년	580	68,366,600	171	27,294,000	409	41,072,600	
2015년	651	67,071,600	181	17,862,000	470	49,209,600	
2014년	463	47,999,000	239	17,864,000	259	30,135,000	

○ 다만, 본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중복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조례안의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안 제4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1항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대하여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4조제3항을 삭제

- 둘째, 안 제18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초구’로 각각 수정함.

- 셋째, 안 제18조제5항에서 ‘소유자’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법 제1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4조가 아닌 조례안 제17조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u>지방자치단체</u> 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u>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u> ⑤ 소유자가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 양할 경우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u>구</u> 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 은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u>해당동 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제17 조를 준용한다.</u>  <u>&lt;삭 제&gt;</u>

- 넷째, 안 제19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사용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별표1’을 근거로 사용된 경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표1’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준으로서 서울시에서는 ‘별표1’의 산정기준은 소요경비 산출이 용이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지난 2017.9.2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전면 개정하면서 ‘별표1’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별표1’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u>별표1과 같다.</u>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u>『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반려동물센터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답>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양재천로 19길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6월에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7월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고 있음.

질> 제26조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자료를 보면 서울에는 광진,마포,동작, 도봉으로 4곳에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답>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3곳이고, 도봉구청에서 한곳을 운영하고 있음. 반려견놀이터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그 규모가 되는 평지가 많지 않음. 시민의 숲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나, 서울시 소유로 애로사항이 있어 현재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임.

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적절한 지적으로 동의함.

## 5. 토론사 및 토론요지

### [ 수정동의안 발의 (발의자 : 오세철 위원) ]

-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구”로, 같은 항 중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를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제19조제2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함.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의제성립)

-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만장일치)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체계사구정리내용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
----------	----

제안일자 : 2018. 09. 07.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구”로, 같은 항 중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를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제19조제2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 3. 수정안 : 별첨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구”로, 같은 항 중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를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제19조제2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u>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u></p> <p>④ (생 략)</p> <p>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u>구청장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u></p> <p>④ <u>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u></p> <p>⑤ <u>소유자가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법 제14조를 준용한다.</u></p>	<p>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u>&lt;삭 제&gt;</u></p> <p>③ (제정안 제4항과 같음)</p> <p>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소유권이 구로 ----- ----- ----- ----- ----- 구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u>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u></u></p> <p>④ ----- ----- -----</p> <p>⑤ <u>&lt;삭 제&gt;</u></p>

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생 략)

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